

1996. 6.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 6. 18. 충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1996. 6. 19.

다. 상 정 일 자 : 제 1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 1차 위원회 (1996. 6. 24.) 상정, 질의, 답변

제 2차 위원회 (1996. 6. 27.)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가. 제안이유

자치법규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상호 모순되는 내용, 어려운 용어, 오탈자 등을 정비하므로서, 생산적인 시정수행 및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므로서, 자치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호 모순된 조례 개정 : 4 건

오탈자정리 및 도량형단위의 외국어 표기를 한글화 하는등의 개정 : 24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의 결정사항중 '농지개량사업추진위원회 업무대행'과 '수도요금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추가신설한 내용으로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함은 적절한 조치로 분석되며,

- 그 밖에,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등 27개 조례의 개정 내역은, 어려운 용어, 상호 모순되는 내용, 오탈자 등을 현실에 맞게 바로 잡거나, 수량단위의 기호와 도량형 단위의 외국어 표기를 한글화 하는 것으로서, 입법형식에 준한 것이며,
- 상위법규나 타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시민의 권리과도 무관하므로 일제정비계획에 의한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답변요지

[질 의]

-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굳이 수량단위및 도량형단위의 기호를 한글화 할 필요가 있는지?

[답 변]

- 법제처의 법령용어 정비요강 및 문교부에서 고시된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수량 단위 및 도량형단위의 기호를 한글화 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임.

[질 의]

-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농경지 정리 및 농지개량사업 등의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 변]

-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제4조(위원회의 대행)에 농지개량사업시행을 위해 농지개량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개량사업 추진위원회는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상호 조례간 모순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임.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붙임

○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동중개정조례안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개정조례(안)

제1조(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개정)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4호 내지 제27호”를 “제16호 내지 제29호”로 하고,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추진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

15. 수도사용요금등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2조(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개정)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 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중 “10%”를 “10퍼센트”로 한다.

제5조제4항중 “20%”를 “20퍼센트”로, 동조제5항제2호중 “년리 8%”를 “연리 8퍼센트”로 한다.

제3조(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의 개정)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 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50정보”를 “5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4조(충주시사회복지관설치조례의 개정) 충주시사회복지회관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5분지 4의”를 “5분의 4”로 한다.

제5조(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용자조례의 개정) 충주시영세민생활안 정기금용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연 5%” 및 “연 15%”를 각각 “연 5퍼센트” 및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6조(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개정) 충주시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0.5ha”를 “5천제곱미터”로, “1,000평”을 “3천300 제곱미터”로 한다.

제7조(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일반폐기물관리 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1kg”을 “1킬로그램”으로 한다.

제8조(충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10ℓ”를 “10리터”로 한다.

제9조(충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의 개정) 충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 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명을 “충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로 한다.

제1조중 “국제화”를 “세계화”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기획담당관”을 “시정과장”으로, “의회제장”을 “시정계장”으로 한다.

제10조(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의 개정)
충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연 6%"를 "연 6퍼센트"로 한다.

제11조(충주시수도급수조례의 개정) 충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요금등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시정조정위원회가 이
를 대행한다.

제12조(충주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공업단지조
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과반수 이상의"를 "과반수의"로 한다.

제18조제2항중 "10%"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3조(충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의 개정) 충주시조례규칙등공포
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단서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한다.

제8조중 "날이나 계시판에 게시한 날이 된다"를 "날이 된다"로 한
다.

제14조(충주시시립가야금연주단설치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시립가야금
연주단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예산의 범위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
되"로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안에
서"로 한다.

제15조(충주시포상조례의 개정) 충주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의1제4항중 "과반수 이상의"를 "과반수의"로 한다.

제16조(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의 개정) 충주시청소년자
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2호"를 삭제 하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7조(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 및 제3호중 "1,000㎡" 및 "2,000㎡"를 각각 "1천제
곱미터" 및 "2천제곱미터"로 하고, 동조 제3호의 단서중 "지방
자치"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18조(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의 개정) 충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중 "50%"를 "50퍼센트"로 한다.

제19조(충주시축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의 개정) 충주시축탁의료인보수지
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범위내로"를 "범위안으로"로, "연 400%"를 "연
400퍼센트"로 한다.

제5조중 "50%"를 "50퍼센트"로 한다.

제20조(충주시문화관사용료징수조례의 개정) 충주시문화관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중 “5%”를 “5퍼센트”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20/100”을 “100분의 20”으로 한다.

제21조(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중 “%”를 “퍼센트”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제17조”를 “제18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50/10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2조(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의 개정) 충주시통및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남여로서”를 “자로서”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제1호 “새마을의 날에 할일 토의”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6호”를 “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23조(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의 개정) 충주시읍면동개발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과반수 이상의”를 “과반수의”로 한다.

제24조(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의 개정) 충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15%”를 “15퍼센트”로 한다.

제25조(충주시시소유임야위탁관리조례의 개정) 충주시시소유임야위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100정보”를 “10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6㎠이상”을 “6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100분지 90”을 “100분의 90”으로, 동항 제3호중 “100%”를 “100퍼센트”로 한다.

제26조(충주시소유산림의이용에따른사용료등의징수조례의 개정) 충주시소유산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등의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령을 “충주시시소유산림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등의징수조례”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2.5/100”를 “100분의 2.5”로, 제3호중 “1/100”을 “100분의 1”로, 제4호중 “5/100”를 “100분의 5”로, 제5호중 “100/100”을 “100분의 100”으로, 제6호중 “10/100”을 “100분의 10”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5/100”를 “100분의 5”로 한다.

제9조중 “10%”를 “10퍼센트”로 한다.

제27조(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 충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중 “파”를 “제곱미터”로, 제2호중 “㎠”를 “센티미터”로, “(양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130㎠이상)일 것”을 “다만, 양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세로 130센티미터로 한다.”로 한다.

제28조(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 충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3%”를 “3퍼센트”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3개월”을 “3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